

보험동향 2014년 겨울호

Ⅰ 총괄	윤성훈 (선임연구위원)
Ⅱ 경제금융 동향	경제총괄 김석영 (연구위원) 세계경제 이아름 (연구원) 국내경제 채원영 (연구원) 금융경제 이해랑 (연구원)
Ⅲ 국내보험시장 동향	보험총괄 김석영 (연구위원) 생명보험 김진억 (수석담당역) 이해랑 (연구원) 손해보험 최 원 (선임연구원) 채원영 (연구원)
Ⅳ 해외보험시장 동향	미 국 이해랑 (연구원) 영 국 김진억 (수석담당역) 일 본 이아름 (연구원) 중 국 이소양 (연구원) 〈부 록〉 아시아 신흥국 생명보험시장의 보험상품과 유통채널 실태 (이소양 연구원)

■ 목차

I. 테마진단

보험회계기준 개정안이 일반손해보험에 미치는 영향 / 1

자동차보험 소비자 분석과 시사점 / 18

II. 경제금융 동향

1. 세계경제 / 46

2. 국내경제 / 65

3. 금융경제 / 78

III. 국내보험시장 동향

1. 보험산업 총괄 / 85

2. 생명보험 / 88

3. 손해보험 / 102

IV. 해외보험시장 동향

1. 미국 동향 / 125

2. 영국 동향 / 132

3. 일본 동향 / 141

4. 중국 동향 / 149

〈부 록〉 아시아 신흥국 생명보험시장의 보험상품과 유통채널 실태 / 159

부록 I. 통계표 / 193

부록 II. 글로벌 이슈 발간 목록 / 200

I. 테마진단

◆ 보험회계기준 개정안이 일반손해보험에 미치는 영향

김해식 연구위원 · 조재린 연구위원

1. 검토배경

이르면 2018년 시행 예정인 보험회계기준 개정안(IFRS 4 phase 2)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가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 등에 집중되어 있고 일반손해보험에 대한 논의는 미미한 실정임. 그러나 phase 2가 일반손해보험에 미치는 영향도 적다고 볼 수 없어 사례분석을 통해 그 영향을 분석하고자 함.

- 보험회계기준 개정안(IFRS 4 phase 2, 이하 phase 2) 확정이 2015년으로 예정되어 있어서 보험산업 내 준비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그동안 phase 2는 보험부채 측정 개념과 방식을 둘러싸고 상당한 진통을 거친 끝에 2015년에 최종기준서가 확정될 예정임.
- 기준서 확정 후 3년의 유예기간이 있으므로 빠르면 2018년부터 phase 2가 시행됨.

- 그런데 phase 2 논의가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 등에 미칠 영향에만 집중되고 있고 일반손해보험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는 미미한 실정임

- phase 2 시행 시 현행 보험부채를 최선추정치, 위험조정, 장래이익으로 세분하여 표시하여야하고 최선추정치의 준거 할인율이 자산운용수익률에서 무위험수익률로 바뀌게 되어 대부분의 논의가 장기보험계약의 준비금 증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그러나 phase 2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손해보험에 대한 영향도 적다고 볼 수 없어 간단한 수치 분석을 통해 경영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일반손해보험의 보험부채: phase 1 vs. phase 2

현재 일반손해보험의 보험부채는 지급준비금과 미경과보험료적립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phase 2는 이들 준비금을 최선추정치(BEL), 위험조정(RA), 장래이익(CSM)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보장기간이 1년 이하이거나 할인 효과가 크지 않은 보험계약의 보험부채에 대해서는 현재의 미경과보험료방식과 유사한 간편 방식을 허용하고 있음.

가. IFRS 4 phase 1: 현행 미경과보험료방식

- 일반손해보험의 보험부채는 크게 지급준비금과 미경과보험료적립금(UPR: Unearned Premium Reserve)으로 구성됨.
 - 지급준비금은 결산일 기준으로 이미 발생하였으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보험사고에 대한 부채로서 여기에는 이미 발생하였으나 아직 보고되지 않은 보험사고(IBNR: Incurred But Not Reported)에 대한 부채도 포함됨.
 -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은 장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사고에 대한 부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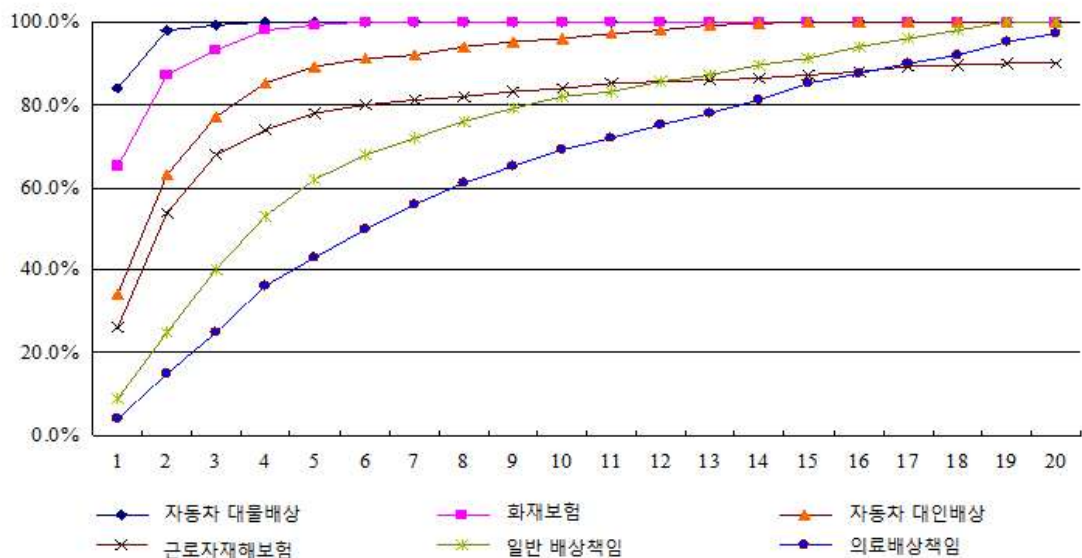
〈그림 1〉 phase 1 손해보험의 재무제표



- 보험료수익은 보험서비스 제공 여부에 따라 경과(Earned; Expired Portion)보험료와 미경과(Unearned; Unexpired Portion)보험료로 구분함.

- 일반적으로 경과보험료와 미경과보험료는 결산일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계약기간과 아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계약기간에 따라 배분함.
- 경과보험료는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서 손익계산서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여 당기에 지급한 보험금, 신계약비를 포함한 사업비 그리고 준비금의 당기 증가분을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인식함.
- 이때, 신계약비 중 당기 수익에 대응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신계약비는 장래 수익에 대응하기 위하여 재무상태표(구 대차대조표)에 이연자산으로 인식됨.
- 보험료 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부분인 미경과보험료는 재무상태표에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이라는 부채로 적립하게 됨.

〈그림 2〉 지급준비금 청산에 소요되는 기간(연): 미국 사례



- 현행 회계기준(IFRS 4 phase 1, 이하 phase 1)에서는 일반손해보험의 미경과보험료적립금 및 지급준비금에 시간가치를 반영하지 않으나, 종목에 따라서 지급준비금의 시간가치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음.
- 지급준비금은 계약 만료 이후에도 보험사고가 해결될 때까지 부채에 남게 되므로 보험금 지급이 장기화할 경우 지급준비금의 시간가치 효과가 커지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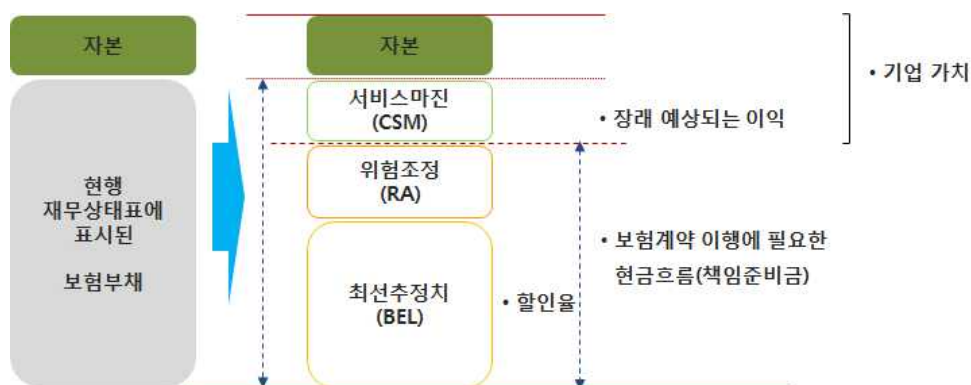
-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책임과 재물보험은 단기간에 보험금 지급이 완료되는 계약 (Short-tail)인 반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책임, 근재보험, 일반배상책임, 의료배상책임 등은 보험금 지급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장기 청산형(Long-tail) 계약임.
- 미국의 경우 자동차대물배상은 2년에 불과한 반면, 의료배상은 20년이 소요됨.
- 그러나 현행 손해보험회계(phase 1)는 장기 청산형 일반손해보험에 대해서 장기보험과 다르게 시간가치 반영을 요구하지 않음.

나. IFRS 4 phase 2: BBA와 PAA

■ phase 2는 장기보험과 단기보험의 보험부채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함.

- phase 2는 보험부채를 장래 현금흐름의 최선추정치, 위험조정, 장래이익으로 구분 (BBA: Building Block Approach)하여 표시함.
- 최선추정치(BEL: Best Estimates of Liabilities)는 장래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시간가치를 반영(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함.
- 위험조정(RA: Risk Adjustments)은 예상 밖의 손실에 대비하여 자본을 보유하는 데 따르는 기회비용임.
- 장래이익(CSM: Contractual Service Margin)은 보험서비스 제공으로 기대되는 이익으로서 서비스 제공 전의 이익 인식을 방지하고자 부채에 포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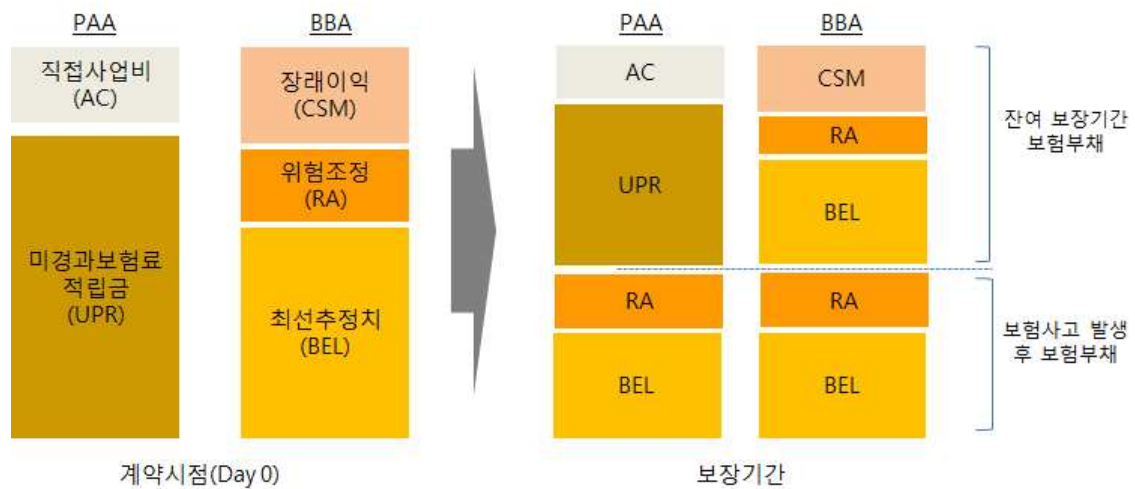
〈그림 3〉 IFRS 4 phase 2 BBA방식 보험부채 평가



자료: 김해식(2014).

- 보장기간이 1년 이하이거나 할인 효과가 크지 않은 보험계약에 대해서 보험회사는 BBA 방식보다 단순한 보험료할당방식(PAA: Premium Allocation Approach)을 적용할 수 있음.
- 보험료할당방식(PAA)에서 아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계약기간의 보험부채를 보험회사는 미경과보험료적립금으로만 표시하므로 현행 미경과보험료방식과 유사함.
- 그러나 PAA에서도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지급준비금을 BEL과 RA로 구분하여 표시하므로 현행 미경과보험료방식과 차이가 있음.

〈그림 4〉 IFRS 4 phase 2: PAA와 BBA 비교



자료: Vlaminckx, D. et al.(2013).

3. phase 2 사례분석

보험회계기준이 phase 1에서 phase 2로 전환될 경우 일반손해보험의 이익이 인식되는 형태가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일반손해보험의 이익인식 패턴이 변하는 원인으로는 지급준비금에 대한 위험조정 반영과 손해액 발생 가정의 변화가 대표적임.

가. 일반손해보험에 대한 phase 1과 phase 2 적용

■ 사례분석을 통해 phase 1과 phase 2의 손익 변화를 파악하고 시사점을 얻고자 함.

- phase 1과 phase 2의 가장 큰 차이는 지급준비금에 있으므로 우선 지급준비금과 관련한 영향을 살펴보고, 이후 가정변경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함.
- 사례분석은 다음의 가정을 토대로 네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분석함.¹⁾
 - 시나리오 1, 2: 지급준비금에 대한 위험조정 반영 여부가 가져올 영향
 - 시나리오 3, 4: 최종 손해율과 손해액 발생 패턴(분포) 변화가 가져올 영향

〈 가정 〉 PAA 적용 조건을 갖춘 일반손해보험 계약

- (1) 한 상품만 존재하고 보험기간 1년, 보험료 1000을 기초에 수금
- (2) 화폐 시간가치가 없음
- (3) 비용은 신계약비(보험료의 12%, 120), 손해조사비(8%, 80) 발생
 - 세금 없고, 손실계약 없음
- (4) 예상 최종손해율(ultimate loss ratio)은 보험료의 60%(600)
 - 재보험 없음
- (5) 발생손해액과 보험금 지급은 예상대로 발생하고 청산에는 1.5년 소요
 - 개별 추산금액에 IBNR을 포함한 금액으로 매기 말 발생
- (6) 초기 자본은 없음

1) Schneider, T. et al.(2014) 제시 사례를 참고함.

〈표 1〉 발생손해액 및 보험금지급 분포

분기	1	2	3	4	5	6
발생손해액누계 (예상=실제)	150 (25%)	300 (50%)	450 (75%)	600 (100%)	-	-
지급보험금누계 (예상=실제)	60 (10%)	120 (20%)	300 (50%)	420 (70%)	540 (90%)	600 (100%)

〈 현행 방식(phase 1) 〉 미경과보험료방식

■ 현행 미경과보험료방식에서는 당기순익을 매분기 50씩 균등하게 인식

- 계약시점에서 납입된 보험료 1000은 매분기 250씩 경과보험료로 인식하고, 최종손해를 60%에 따른 발생손해액 600은 매분기 150을 준비금증가(비용)로 인식하여 지급준비금(부채)을 적립함(〈표 2〉).

- 지급준비금의 청산 소요기간은 1.5년, 즉 6개 분기가 소요됨(〈표 2〉).

〈표 2〉 현행 미경과보험료방식에서의 손익

분기	1	2	3	4	5	6
경과보험료	250	250	250	250	-	-
발생손해액	(150)	(150)	(150)	(150)	-	-
지급보험금	60	60	180	120	120	60
손해조상비 등	(20)	(20)	(20)	(20)	-	-
신계약비	(30)	(30)	(30)	(30)	-	-
당기순익	50	50	50	50		

■ 위 사례에 네 가지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phase 2 영향을 살펴보고자 함.

- 부분균형분석을 통해 위험조정이나 손해액 하나의 변수만 변화시켜 phase 2 적용 영향을 분석함.

〈 시나리오 1 〉 위험조정 없음

■ 위험조정이 없다면(또는 위험조정 구분 요건이 없다면), phase 1과 phase 2 모두 매분기마다 50의 이익이 발생하는 당기순익 패턴에는 차이가 없음(표 2와 표 2.1, 표 2.2).

○ 다만, BBA가 PAA나 미경과보험료방식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함.

〈표 2.1〉 PAA 적용 손익(RA는 없다고 가정)

분기	0	1	2	3	4	5	6
자산	880	800	720	520	380	260	200
부채	880	750	620	370	180	60	-
UPR	880	660 ¹⁾	440	220	-	-	-
BEL	-	90 ²⁾	180	150	180	60	
지급준비금	-	90	180	150	180	60	-
자본	-	50	100	150	200	200	200
당기순익	-	50	50	50	50	-	-

주: 1) 매분기 경과보험료 250 중 사업비 30을 차감한 220이 미경과보험료적립금에서 경과보험료로 전환.

2) 발생손해액 150 중 보험금 60을 지급하여 1분기 말 지급준비금은 90.

〈표 2.2〉 BBA 적용 손익(RA는 없다고 가정)

분기	0	1	2	3	4	5	6
자산	880	800	720	520	380	260	200
부채	880	750	620	370	180	60	-
CSM	200	150	100	50	-		
BEL	680	600	520	320	180	60	-
기대손실	600	450	300	150	-	-	-
손해조사비	80	60	40	20	-	-	-
지급준비금	-	90	180	150	180	60	-
자본	-	50	100	150	200	200	200
당기순익	-	50	50	50	50		

〈 시나리오 2 〉 위험조정 반영

■ 위험조정을 지급준비금의 30%로 설정하여 반영할 경우 phase 1에 비해 phase 2에서 당기순익 인식이 뒤로 지연되는 결과가 나타남(표 2와 표 2.3, 표 2.4).

○ phase 2에서 초기 인식되는 이익규모가 phase 1에 비해 감소됨.

〈표 2.3〉 PAA 적용 손익(RA는 지급준비금의 30%)

분기	0	1	2	3	4	5	6
자산	880	800	720	520	380	260	200
부채	880	777	674	415	234	78	-
UPR	880	660	440	220	-	-	-
RA	-	27 ¹⁾	54	45	54	18	-
BEL	-	90	180	150	180	60	-
지급준비금	-	90	180	150	180	60	-
자본	-	23	46	105	146	182	200
당기순익	-	23	23	59	41	36	18

주: 1) RA = 90(1분기 지급준비금) * 30% = 27

〈표 2.4〉 BBA 적용 손익(RA는 지급준비금의 30%)

분기	0	1	2	3	4	5	6
자산	880	800	720	520	380	260	200
부채	880	777	674	415	234	78	-
CSM	200	150	100	50	-	-	-
RA	-	27	54	45	54	18	-
BEL	680	600	520	320	180	60	-
기대손실	600	450	300	150	-	-	-
손해조사비	80	60	40	20	-	-	-
지급준비금	-	90	180	150	180	60	-
자본	-	23	46	105	146	182	200
당기순익	-	23	23	59	41	36	18
CSM 상각	-	50	50	50	50		
RA 상각	-	(27)	(27)	9	(9)	36	18

〈 시나리오 3 〉 최종 손해율 변화(손해액 발생 분포는 그대로)

■ 손해액 발생 및 보험금 지급 패턴에 변화는 없지만 3분기 이후 최종손해율 가정을 당초 60%에서 70%로 높아진다고 변경함.

- 최종손해율이 70%일 경우 발생손해액이 600에서 700으로 상향 조정되어 3분기부터 발생손해액과 지급보험금 규모가 증가함.

〈표 1.1〉 발생손해액 및 보험금지급 금액 변화

분기	1	2	3	4	5	6
발생손해액누계 (예상=실제)	150 (25%)	300 (50%)	525 ¹⁾ (75%)	700 (100%)	-	-
지급보험금누계 (예상=실제)	60 (10%)	120 (20%)	350 ²⁾ (50%)	490 (70%)	630 (90%)	700 (100%)

주: 1) $1000 * 70\% * 75\% = 525$

2) $700 * 50\% = 350$

■ 최종손해율 변화에도 phase 2 손익 패턴은 phase 1과 차이가 없음.

- 현행 미경과보험료방식에서는 최종손해율 가정 변화로 당기손익이 적자로 전환되었다가 이후 순익 규모가 초기보다 축소되는 패턴이 나타남.
- phase 2 BBA의 경우 손해율 가정 변화는 CSM 조정으로 반영됨.

〈표 3〉 현행 미경과보험료방식에서의 손익

분기	1	2	3	4	5	6
경과보험료	250	250	250	250	-	-
발생손해액	(150)	(150)	(225) ¹⁾	(175)	-	-
지급보험금	60	60	230	140	140	70
손해조사비 등	(20)	(20)	(20)	(20)	-	-
신계약비	(30)	(30)	(30)	(30)	-	-
당기손익	50	50	(25)	25		

주: 1) $525(3분기 누적 발생손해액) - 300(2분기 누적 발생손해액) = 225$

〈표 3.1〉 PAA 적용 손익(예상 최종손해율 70%, RA는 0)

분기	0	1	2	3	4	5	6
자산	880	800	720	470 ¹⁾	310	170	100
부채	880	750	620	395	210	70	-
UPR	880	660	440	220	-	-	-
RA	-	-	-	-	-	-	-
BEL	-	90	180	175	210	70	-
지급준비금	-	90	180	175 ²⁾	210	70	-
자본	-	50	100	75	100	100	100
당기순익	-	50	50	(25)	25	-	-

주: 1) 1000(보험료) - 120(신계약비) - 60(손해조사비) - 350(지급보험금) = 470(자산)

2) 525(3분기 누적 발생손해액) - 350(3분기 누적 지급보험금) = 175(지급준비금)

〈표 3.2〉 BBA 적용 손익(예상 최종손해율 70%, RA는 0)

분기	0	1	2	3	4	5	6
자산	880	800	720	470 ¹⁾	310	170	100
부채	880	750	620	395	210	70	-
CSM	200	150	100	25 ²⁾	-	-	-
RA	-	-	-	-	-	-	-
BEL	680	600	520	370	210	70	-
기대손실	600	450	300	175 ³⁾	-	-	-
손해조사비	80	60	40	20	-	-	-
지급준비금	-	90	180	175 ⁴⁾	210	70	-
자본	-	50	100	75	100	100	100
당기순익	-	50	50	(25)	25	-	-
CSM 상각	-	50	50	(25)	25	-	-

주: 1) 1000(보험료) - 120(신계약비) - 60(손해조사비) - 350(지급보험금) = 470(자산)

2) 220(기대수입 = 250 - 30) - 175(기대손실) - 20(손해조사비) = 25

3) 700(최종 발생손해액) - 525(3분기 누적 발생손해액) = 175(기대손실)

4) 525(3분기 누적 발생손해액) - 350(3분기 누적 지급보험금) = 175(지급준비금)

〈 시나리오 4 〉 손해액 발생 분포 변화(서비스 패턴의 변화)

- 보험사고 청구율이 2분기에 집중되면서 손해액의 발생 분포, 즉 서비스 제공(Service Transfer) 패턴이 변한다고 가정을 변경함(2분기 50% → 75%, 3분기 75% → 90%).

〈표 1.2〉 발생손해액 및 보험금지급 패턴 변화

분기	1	2	3	4	5	6
발생손해액누계 (예상=실제)	150 (25%)	450 ¹⁾ (75%)	540 (90%)	600 (100%)	-	-
지급보험금누계 (예상=실제)	60 (10%)	120 (20%)	300 (50%)	420 (70%)	540 (90%)	600 (100%)

주: 1) $1000 * 60\% * 75\% = 450$

- 손해액 발생 분포가 초기에 집중될 경우 phase 1과 phase 2 손익 패턴이 대조적인데, phase 1은 “상저하고”, phase 2는 “상고하저”로 나타남.

- phase 1은 서비스 제공 패턴의 변화가 수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보험금과 손해조사비만 변동시킨다고 보아 손해액이 증가한 2분기에는 그만큼 당기손실이 발생함.

〈표 4〉 현행 미경과보험료방식에서의 손익

분기	1	2	3	4	5	6
경과보험료	250	250	250	250	-	-
발생손해액	(150)	(300) ¹⁾	(90)	(60)	-	-
지급보험금	60	60	180	120	120	60
손해조사비 등	(20)	(40) ²⁾	(12)	(8)	-	-
신계약비	(30)	(30)	(30)	(30)	-	-
당기손익	50	(120)	118	152		

주: 1) $450(2분기 누적 발생손해액) - 150(1분기 누적 발생손해액) = 300$

2) $80(손해조사비) * (75\% - 25\%) = 40$

- 반면, phase 2에서는 손해액 발생 분포가 달라지면, 이를 서비스 제공 정도의 변화로 보고 보험료수익과 장래이익도 비례적으로 조정함.

- PAA의 경우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의 경과보험료 전환 비율도 변경된 발생손해액 분포를 반영하여 2분기에 50%를 인식하므로 2분기 말의 미경과보험료적립금 잔액은 25%에 해당하는 220, 3분기 말에는 10%에 해당하는 88만 남음.
- BBA의 경우에도 장래이익(CSM)을 발생손해액 분포에 따라 이익으로 인식함.

〈표 4.1〉 PAA 적용 손익(초기 청구율 급증, RA는 0)

분기	0	1	2	3	4	5	6
자산	880	800	700	508	380	260	200
부채	880	750	550	328	180	60	-
UPR	880	660	220 ¹⁾	88 ¹⁾	-	-	-
RA	-	-	-	-	-	-	-
BEL	-	90	330	240	180	60	
지급준비금	-	90	330	240	180	60	-
자본	-	50	150	180	200	200	200
당기순익	-	50	100	30	20	-	-

주: 1) $880 * (1 - 0.75) = 220$, $880 * (1 - 0.9) = 88$

〈표 4.2〉 BBA 적용 손익(초기 청구율 급증, RA는 0)

분기	0	1	2	3	4	5	6
자산	880	800	700 ¹⁾	508	380	260	200
부채	880	750	550	328	180	60	-
CSM	200	150	50 ²⁾	20	-		
RA	-	-	-	-	-		
BEL	680	600	500	308	180	60	-
기대손실	600	450	150 ²⁾	60	-	-	-
손해조사비	80	60	20	8	-	-	-
지급준비금	-	90	330	240	180	60	-
자본	-	50	150	180	200	200	200
당기순익	-	50	100	30	20	-	-
CSM 상각	-	50	100	30	20	-	-

주: 1) $1,000 - 120(\text{신계약비}) - 60(2\text{분기 누적 손조비} = 20 + 40) - 120(2\text{분기 누적 지급보험금}) = 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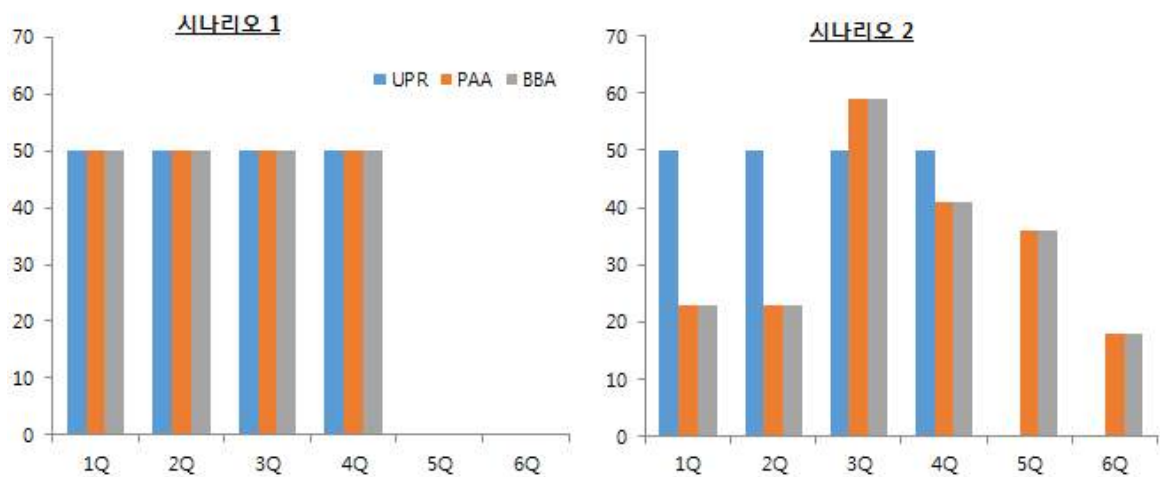
2) $200 * (1 - 0.75) = 50$, $600 * (1 - 0.75) = 150$

나. 일반손해보험에 대한 phase 2 영향

■ 보험회계기준이 phase 2로 이행할 경우 일반손해보험의 이익 인식 시기가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시나리오 1(RA=0)〉과 〈시나리오 2(RA≠0)〉를 비교하면, 위험조정의 반영 여부가 손익 패턴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음.
- 위험조정을 지급준비금에 반영하게 되면 phase 2에서는 BBA나 단순화된 PAA 적용 모두 현행 미경과보험료방식을 적용할 때보다 초기에 인식되는 이익규모가 작아지는 결과가 나타남.
- 시간가치 효과가 크지 않은 일반손해보험의 경우 phase 1과 phase 2의 차이가 지급준비금에 있으므로 위험조정 반영 여부에 따라 손익 패턴이 영향을 받음.

〈그림 5〉 phase 2: 위험조정 반영 여부와 손익 패턴



주: 〈표 2〉, 〈표 2.1 ~ 2.4〉 당기손익 비교.

■ 최종손해율 변화로 손해액 규모가 변화하더라도 패턴에 변화가 없으면 phase 1과 phase 2의 손익 패턴은 차이가 없지만, 패턴에 차이가 생기면 phase 1과 phase 2의 손익 패턴은 다르게 나타남.

- 〈시나리오 3(손해율 변화)〉와 〈시나리오 4(손해액 발생의 패턴 변화)〉를 비교하면, 시나리오 4에서 손익 패턴이 달라짐.

- phase 2는 서비스 제공 패턴에 변화가 생기면 그에 따라 비용은 물론 수익 인식도 조정되므로 phase 1보다 손익 패턴이 평탄하게 나타남.

〈그림 6〉 phase 2: 발생손해액 규모 및 패턴 변화와 손익 패턴



주: 〈표 3〉, 〈표 3.1〉, 〈표 3.2〉, 〈표 4.1〉, 〈표 4.2〉 당기순익 비교.

4. 결론 및 시사점

IFRS 4 phase 2는 모든 보험계약에 대해 BBA 적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지만, 할인 효과가 크지 않은 일반손해보험에는 PAA 적용이 가능하므로 phase 2 전환기에 PAA는 손해보험회사의 부담을 줄여줄 유용한 대안이 될 것임. 또한 손해보험회사는 phase 2가 자동차보험이나 전통 손해보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으므로 이에 대비해야 함.

■ IFRS 4 phase 2가 할인 효과가 크지 않은 일반손해보험에 대해서는 BBA보다 단순한 PAA 적용이 가능하므로 phase 2 최초 적용 시에 기존 보유계약에 PAA를 적용한다면 보험회사의 이행기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PAA를 적용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전환기 CSM 추정 부담이 없고, 장기보험 특약 등에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여 보험회사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장기 청산형 일반손해보험에 PAA 적용이 가능한 지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장기보험과 마찬가지로 BBA를 적용해야 할 경우 장래이익(CSM) 추정과 손실계약의 즉시 인식에 대한 계리 및 재무 측면의 대비가 필요할 것임.

■ 사례분석은 phase 2가 일반손해보험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적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손해보험회사의 경영상 대비가 필요함.

- phase 2는 지급준비금에 위험조정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어서 지금보다 보험부채가 늘어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영향 분석이 필요할 것임.
- 또한 일반손해보험에 phase 2를 적용할 때 초기에 인식하는 이익의 규모가 축소되는 것은 초기 자본부담이 지금보다 늘어남을 의미하므로 이에 대한 보험회사의 대비가 필요함.
- 개별 보험회사는 자사의 상품구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사례분석을 통해 향후 대응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참 고 문 헌〉

김해식(2014. 3. 28), “IFRS 보험부채 시가평가 현안과 과제,” 리스크관리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정책세미나, 한국리스크관리학회.

Schneider, T., Bielman, P. and Dornheim, H.(2014), “Case Study: Potential Impacts of IFRS 4
phase II on Non-life Insurance Accounting,” KPMG(<http://www.kpmg.ch>).

Vlaminckx, D., Vandeweghe, C. and Lievens, B.(2013), “IFRS 4(phase II) for Insurance Contracts:
Revised Exposure Draft Explained through an Illustrative Example,” Deloitte.